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10. 22.

하동군의회의장 강 희 순

1. 조례명: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하동공설시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상인들의 영업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설시장 사용허가 갱신횟수 조정(안 제4조)

나. 공설시장 사용허가 취소·정지에 대한 경고 및 시정명령 절차 마련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
(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 1) 팩스: 055-880-2939
- 2) 하동군의회 홈페이지(<http://www.hdcl.go.kr>) 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
- 3) e-mail: star0208@korea.kr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조항)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허가 조건에 충족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갱신에 적용할 세부적인 사용 허가 조건을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하여 사용자가 갱신을 신청하기 전에 알려야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 군수는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을 “경우 군수는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경고를 받

은 자에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시정명령 절차 없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허가) ①・② (생 략)	제4조(사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5년의 기간 내에서 시장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 지 제1호 및 제1-1호서식에 의 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u>이 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갱신기 간은 5년, 횟수는 1회로 한다.</u> <u><신 설></u>	③ ----- ----- ----- ----- ----- ----- <u><후단 삭제></u>
<u><신 설></u>	④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 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자 가 사용허가 조건에 충족한 경 우에는 사용허가를 계속하여 갱 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 은 갱신할 때마다 5년으로 한 다.
<u><신 설></u>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갱신에 적용할 세부적인 사용 허가 조 건을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하여 사용자가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시정명령 절차 없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